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369,522,465 | 11,085,674 |
| 일반회계 | 312,502,442 | 9,375,073 |
| 특별회계 | 57,020,023 | 1,710,601 |
| 공기업특별회계 | 21,948,972 | 658,469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1,948,972 | 658,469 |
| 기타특별회계 | 35,071,051 | 1,052,132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1,181,645 | 35,449 |
|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| 1,821,796 | 54,654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| 326,305 | 9,789 |
| 담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166,721 | 5,002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457,400 | 13,722 |
|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414,000 | 12,420 |
|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| 858,532 | 25,756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6,000 | 18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29,838,652 | 895,160 |

제 2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(지방채 발행) : "해당없음"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(계속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7 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,515,532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(예산의 이용) :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2. 재무활동경비
3.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
4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